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2. 3. 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2. 3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 字 시행)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2022. 1. 13. 字 시행)
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(안 제1조)
-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(안 제5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

제5조 부칙 외의 부분 중 “구미시”를 “구미시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36조</u> 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33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<u>구미시</u>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	제5조(준용) ----- ----- <u>구미시의회</u> ----- -----.
부칙 제1364호 (생 략)	부칙 제1364호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3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: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
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: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, 재정능력,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,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
3.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: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